安秉直교수의 「別個論」을 통박한다

성화대도서관 부관장 李東春씨 특별寄稿

위안부의 代名詞였다"

요즘 韓·日간의 일대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으면서도 아직은 외교적 쟁점으로 가닥을 잡지 못한 채 우리민족의 분노와 자존의 문제로 얽혀있는 사안이 바로 여자挺身隊와 從軍慰安婦의 문제다. 이 문제는 2차대전 당시 日本이 朝鮮을 식민통치하면서 저질렀던 천인공노할 국가적 범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전후 우리측 피해자들의 침묵(너무나도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워서)과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사실 은폐로 아직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한채 역사에서 영영 망각될 뻔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년 우리측 피해자 극소수의 뒤늦은 피해호소보다는 오히려 가해국인 일본측의 일부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양심선언과 사료발굴 등으로 이 문제가 점차 클로스업되고 있어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면이 없지도 않았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大의 저명한 경제사학자 安秉直교수는 지난 2월22일자 한국일보(석간)에 기고한 「정신대문제 바로 알자」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시기나 제도상 「근로정신대」와 「종군의 별개임을 전제

◇李東春씨

하고 동원된 일부가 종군위안부로 전출된 것은 사실인 듯하다고 지극히 애매한 어투로 일단 시인은 해놓고도 정신대의 기본성격이 어디까지나 근로동원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종군위안부와 본질적으로 범주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역시 정신대문제에 대한 그의 인식천박 내지 편견에서 오는 고의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日帝는 강제로 연행된 조선인 여자집단을 정신대라 호칭하고 여자근로정신대와 「종군의 별개임을 전제한 뒤 조사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安교수의 이상과 같은 주장은 일견 정신대문제에 냉정하게 접근하려는 학자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전제한 뒤 조사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安교수의 이상과 같은 주장은 일견 정신대문제에 냉정하게 접근하려는 학자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전제한 뒤 조사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첫째 정신대 동원의 시기문제에 대해서 安교수는 「여자정신대 근로령」에 의한 1944년8월의 동원이전에는 조선에서 정신대라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943년5월부터 정신대의 명칭으로 조선의 독신여성을 강제로 동원했음이 참전 日人들의 참회록에서 무수히 발견된다. 따라서 여자정신대가 1944년8월 이후에만 존재했다는 安교수의 주장은 학자의 생명인 문헌조사의 철저를 기하지 못한 태만의 소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둘째 安교수는 정신대로 동원된 일부가 종군위안부로 전출된 것은 사실인 듯하다고 지극히 애매한 어투로 일단 시인은 해놓고도 정신대의 기본성격이 어디까지나 근로동원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종군위안부와 본질적으로 범주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역시 정신대문제에 대한 그의 인식천박 내지 편견에서 오는 고의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日帝는 강제로 연행된 조선인 여자집단을 정신대라 호칭하고 여자근로정신대와 「종군의 별개임을 전제한 뒤 조사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安교수의 이상과 같은 주장은 일견 정신대문제에 냉정하게 접근하려는 학자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전제한 뒤 조사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첫째 정신대 동원의 시기문제에 대해서 安교수는 「여자정신대 근로령」에 의한 1944년8월의 동원이전에는 조선에서 정신대라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943년5월부터 정신대의 명칭으로 조선의 독신여성을 강제로 동원했음이 참전 日人들의 참회록에서 무수히 발견된다. 따라서 여자정신대가 1944년8월 이후에만 존재했다는 安교수의 주장은 학자의 생명인 문헌조사의 철저를 기하지 못한 태만의 소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둘째 安교수는 정신대로 동원된 일부가 종군위안부로 전출된 것은 사실인 듯하다고 지극히 애매한 어투로 일단 시인은 해놓고도 정신대의 기본성격이 어디까지나 근로동원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종군위안부와 본질적으로 범주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역시 정신대문제에 대한 그의 인식천박 내지 편견에서 오는 고의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日帝는 강제로 연행된 조선인 여자집단을 정신대라 호칭하고 여자근로정신대와 「종군의 별개임을 전제한 뒤 조사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安교수의 이상과 같은 주장은 일견 정신대문제에 냉정하게 접근하려는 학자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전제한 뒤 조사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첫째 정신대 동원의 시기문제에 대해서 安교수는 「여자정신대 근로령」에 의한 1944년8월의 동원이전에는 조선에서 정신대라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943년5월부터 정신대의 명칭으로 조선의 독신여성을 강제로 동원했음이 참전 日人들의 참회록에서 무수히 발견된다. 따라서 여자정신대가 1944년8월 이후에만 존재했다는 安교수의 주장은 학자의 생명인 문헌조사의 철저를 기하지 못한 태만의 소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둘째 安교수는 정신대로 동원된 일부가 종군위안부로 전출된 것은 사실인 듯하다고 지극히 애매한 어투로 일단 시인은 해놓고도 정신대의 기본성격이 어디까지나 근로동원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종군위안부와 본질적으로 범주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역시 정신대문제에 대한 그의 인식천박 내지 편견에서 오는 고의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日帝는 강제로 연행된 조선인 여자집단을 정신대라 호칭하고 여자근로정신대와 「종군의 별개임을 전제한 뒤 조사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安교수의 이상과 같은 주장은 일견 정신대문제에 냉정하게 접근하려는 학자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전제한 뒤 조사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첫째 정신대 동원의 시기문제에 대해서 安교수는 「여자정신대 근로령」에 의한 1944년8월의 동원이전에는 조선에서 정신대라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943년5월부터 정신대의 명칭으로 조선의 독신여성을 강제로 동원했음이 참전 日人들의 참회록에서 무수히 발견된다. 따라서 여자정신대가 1944년8월 이후에만 존재했다는 安교수의 주장은 학자의 생명인 문헌조사의 철저를 기하지 못한 태만의 소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둘째 安교수는 정신대로 동원된 일부가 종군위안부로 전출된 것은 사실인 듯하다고 지극히 애매한 어투로 일단 시인은 해놓고도 정신대의 기본성격이 어디까지나 근로동원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종군위안부와 본질적으로 범주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역시 정신대문제에 대한 그의 인식천박 내지 편견에서 오는 고의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日帝는 강제로 연행된 조선인 여자집단을 정신대라 호칭하고 여자근로정신대와 「종군의 별개임을 전제한 뒤 조사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安교수의 이상과 같은 주장은 일견 정신대문제에 냉정하게 접근하려는 학자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전제한 뒤 조사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첫째 정신대 동원의 시기문제에 대해서 安교수는 「여자정신대 근로령」에 의한 1944년8월의 동원이전에는 조선에서 정신대라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943년5월부터 정신대의 명칭으로 조선의 독신여성을 강제로 동원했음이 참전 日人들의 참회록에서 무수히 발견된다. 따라서 여자정신대가 1944년8월 이후에만 존재했다는 安교수의 주장은 학자의 생명인 문헌조사의 철저를 기하지 못한 태만의 소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둘째 安교수는 정신대로 동원된 일부가 종군위안부로 전출된 것은 사실인 듯하다고 지극히 애매한 어투로 일단 시인은 해놓고도 정신대의 기본성격이 어디까지나 근로동원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종군위안부와 본질적으로 범주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역시 정신대문제에 대한 그의 인식천박 내지 편견에서 오는 고의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日帝는 강제로 연행된 조선인 여자집단을 정신대라 호칭하고 여자근로

월 이전에 정신대없었다" 주장은 문헌조사 태만
사 목적으로만 동원" 주장은 日本국내서만 해당
밝혀진 바 없다"는 주장은 日帝의 은폐·말살 두둔
하위해 위안부로 봐선 안된다"는 주장은 本質호도

◇日帝의 조선여성을 상대로 한 정신대 만행에 관한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증언과 사료발굴기록은 부수하게 많다. 그중에서도 吉田淸治의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川田文子의 「赤瓦의 집」등은 그 대표적 증언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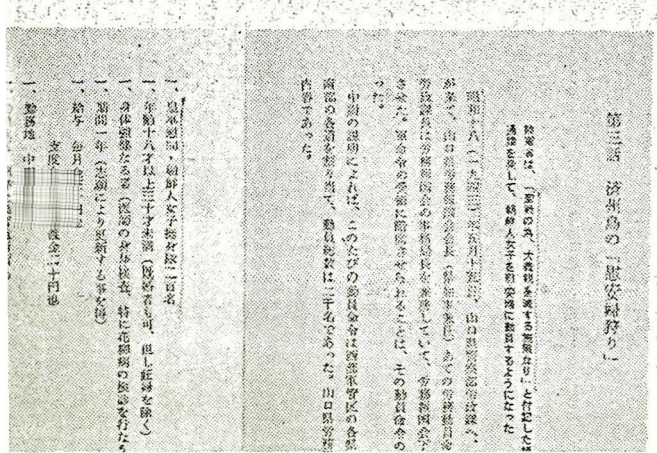

◇吉田은 「濟州道의 위안부사냥」에서, 軍은 △皇軍위문-조선인 여자정신대 △연령 18세이상 35세미만(기혼자도 포함) △조선인 여자정신대로 보국대가 여자정신대로 개칭되어 여학생과 여자정신대의 군수공장 근로봉사도 정신대로 불렸으나 황군위문의 정신대란 종군위안부를 말한다. 종군위안부란 당시 신문과 라디오에는 한 번도 보도된 바 없었다. 더구나 日帝는 이 천인공노할 죄상을 영원히 은폐하기 위해서 관련 기록을 말살 폐기하였고, 잔존자료도 철저히 숨겨왔다. 따라서 직접자료를 토대로 한 총체적 실태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구태여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이것을 간주하고 실상을 파헤쳐야 한다는 安교수의 이른바 「手順論」은 그가 정신대의 본질을 출발부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자가류의 억측으로 전제한 뒤 조사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安교수의 이상과 같은 주장은 일견 정신대문제에 냉정하게 접근하려는 학자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전제한 뒤 조사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첫째 정신대 동원의 시기문제에 대해서 安교수는 「여자정신대 근로령」에 의한 1944년8월의 동원이전에는 조선에서 정신대라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943년5월부터 정신대의 명칭으로 조선의 독신여성을 강제로 동원했음이 참전 日人들의 참회록에서 무수히 발견된다. 따라서 여자정신대가 1944년8월 이후에만 존재했다는 安교수의 주장은 학자의 생명인 문헌조사의 철저를 기하지 못한 태만의 소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둘째 安교수는 정신대로 동원된 일부가 종군위안부로 전출된 것은 사실인 듯하다고 지극히 애매한 어투로 일단 시인은 해놓고도 정신대의 기본성격이 어디까지나 근로동원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종군위안부와 본질적으로 범주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역시 정신대문제에 대한 그의 인식천박 내지 편견에서 오는 고의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日帝는 강제로 연행된 조선인 여자집단을 정신대라 호칭하고 여자근로

안秉直교수의 「別個論」을 통박한다
성화대도서관 부관장 李東春씨 특별寄稿
위안부의 代名詞였다"
요즘 韓·日간의 일대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으면서도 아직은 외교적 쟁점으로 가닥을 잡지 못한 채 우리민족의 분노와 자존의 문제로 얽혀있는 사안이 바로 여자挺身隊와 從軍慰安婦의 문제다. 이 문제는 2차대전 당시 日本이 朝鮮을 식민통치하면서 저질렀던 천인공노할 국가적 범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전후 우리측 피해자들의 침묵(너무나도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워서)과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사실 은폐로 아직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한채 역사에서 영영 망각될 뻔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년 우리측 피해자 극소수의 뒤늦은 피해호소보다는 오히려 가해국인 일본측의 일부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양심선언과 사료발굴 등으로 이 문제가 점차 클로스업되고 있어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면이 없지도 않았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大의 저명한 경제사학자 安秉直교수는 지난 2월22일자 한국일보(석간)에 기고한 「정신대문제 바로 알자」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시기나 제도상 「근로정신대」와 「종군의 별개임을 전제
하고 동원된 일부가 종군위안부로 전출된 것은 사실인 듯하다고 지극히 애매한 어투로 일단 시인은 해놓고도 정신대의 기본성격이 어디까지나 근로동원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종군위안부와 본질적으로 범주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역시 정신대문제에 대한 그의 인식천박 내지 편견에서 오는 고의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日帝는 강제로 연행된 조선인 여자집단을 정신대라 호칭하고 여자근로

국회 下關지부동원부장이던 吉田淸治씨는 조선처녀들을 정신대로 끌어간 이름난 인간사냥군이었다. 그가 지금은 양심선언하고 속죄한 나머지 고백수기를 두 권이나 출간했다.

그 책의 하나인 「나의 전쟁범죄, 조선인 강제연행」(1983·三一書房)의 20쪽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조선인 여자정신대에 皇軍위문을 의무지웠는데 이는 性的 위문으로써 종군위안부로 불리었다. 昭和18년(1943)이 되니 조선인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關釜연락선 사냥 함목에서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昭和18년(1943)5월15일 일본 서부군관부 사령부로부터 각 縣의 노무보국회에 조선 남부의 각 道로 조선인 여자정신대 2천명의 동원명령이 내려졌다. 이중 山口縣 노무보국회에서 받은 동원명령은 다음과 같다』(사진참조). 그리고 『여자근로보국대가 여자정신대로 개칭되어 여학생과 여자청년단의 군수공장 근로봉사도 정신대로 불렸으나 황군위문의 정신대란 종군위안부를 말한다. 종군위안부란 당시 신문과 라디오에는 한 번도 보도